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757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30.

발 의 자 : 이수진 · 김문수 · 박희승
김정호 · 남인순 · 송옥주
임미애 · 이건태 · 최혁진
이개호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중보건의사제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필수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력으로 하여금 병역의무에 갈음하여 의료취약지역에 복무하도록 하는 제도임. 그런데 최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서비스 공백이 우려되고 있음.

한편, 현행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9조의2제2항은 직무교육에 불응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박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이에 기초하여 현행 「병역법」 제35조제1항은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하는 경우를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공중보건의사제도의 운영 상황을 고려한 보다 실효적인 운영을 위하여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의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공중보건의사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, 이에 따라 「병역법」의 신상변동 통보 및 처리 사유도 직무교육명령에 불응하여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박탈된 경우로 한정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정비하려는 것임(안

35조의 제1항 제2호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이수진위원이 대표발의한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5756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법률 제 호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「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신분이 박탈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5조(공중보건 의사 등의 신상 변동 통보 및 처리) ① 보건복 지부장관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공중보건 의사 또는 병역판정검 사전담 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는 14일 이내에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	제35조(공중보건 의사 등의 신상 변동 통보 및 처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「 <u>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 한 특별조치법</u> 」에 따른 직 무교육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<u>경우</u>	2. 「 <u>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 한 특별조치법</u> 」 제9조의2제 2항제1호에 따라 공중보건의 <u>사 신분이 박탈된 경우</u>
3. ~ 6. (생 략)	3. ~ 6. (현행과 같음)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